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 준용 근거, 하한액 산정 근거 및 감액 근거 마련(안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
- 나. 예술인·노무제공자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안 제104조의9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급여 또는”을 “급여,”로, “급여”를 “급여 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로 한다.

제101조제2호 중 “휴가 또는”을 “휴가,”로, “한다)”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로 한다.

제104조 본문 중 “기간 또는”을 “기간,”으로, “기간 중”을 “기간 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으로 한다.

제104조의9제2항제1호 중 “한”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9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산하는 예술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9제2항제1호의 개정에 따른 제104조의16제2항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산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5조 제2호 단서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 휴가 <u>급여</u>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u>급여</u> (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제100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		

		-----		급여,
		-----		급여 또
		-----		는 <u>난임치료휴가 급여</u> -----
		-----		-----.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u>휴가</u>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u>한다</u>)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		2. -----		
		-----		휴가, -----
		-----		-----
		-----		-----
		-----		한다) 또는
		-----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
		-----		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
		-----		가”라 한다)-----
		-----		-----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① (생략)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한 경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생략) ③ ~ ⑤ (생략)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 ----- ----- ---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476